

대법원 2019. 5. 16 자 2018재다24828 결정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9. 5. 16 자 2018재다24828 결정

대법원 2018. 10. 12 선고 2018다242376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5. 23 선고 2017나26890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 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B 조합

판결 선고 2019. 5. 16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8다242376 판결

주문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'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' 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(재심원고, 이하 ' 원고' 라 한다) 의 상고이유 주장 내용이 위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것이므로,거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을수 없다(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5재다1008 판결 등 참조).

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.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,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주심 대법관 권순일대법관 이기택대법관 김선수